[사기 계약서 예시 2] 제2조 (확정일자 및 전입신고) 본 계약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, 임차인의 행정처리 미비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시한다.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.